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6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김민전 · 강선영 · 권성동
서천호 · 이종배 · 조정훈
김상훈 · 배준영 · 안철수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음.

그런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

항 제2호 단서 신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를 신청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단서 신설>	2. ----- ----- ----- ----- ----- ----- -----. <u>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을 취득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